

뱅크월렛 서비스 온라인가맹점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뱅크월렛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뱅크월렛”이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모바일현금카드와 뱅크머니의 발급,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멤버십, 포인트, 쿠폰정보 안내, 선물하기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현금카드”란 은행에서 이용자의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며, 동 계좌 정보가 수록되어 현금인출 등의 기능이 있는 IC칩 기반의 카드를 말합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란 이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아 뱅크월렛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말합니다.
4. “뱅크머니”란 뱅크월렛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원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USIM칩 등에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NFC형 뱅크머니”와 충전식 선불계정으로 발급받은 “네트워크형 뱅크머니”를 포함합니다.
5. “발행기관”이란 뱅크월렛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용자에게 모바일현금카드 또는 뱅크머니 등을 발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은행을 포함합니다.
6. “이용자”란 뱅크월렛 발급 웹페이지(이하 “웹페이지”라 합니다) 또는 뱅크월렛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 및 발급을 정상적으로 마쳐 발행기관과의 이용계약이 성립한 자를 말합니다.
7. “가맹점”이란 PC, 스마트폰, TV등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로서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을 승인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8.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9. “비밀번호 등”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사용하는 지갑비밀번호와 네트워크형 뱅크머니 발급 시 고객이 설정하는 숫자 4자리인 뱅크머니PIN 및 이용자가 발행기관에서 정한 현금카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고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예금계좌의 개설 등)

- ①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를 은행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제1항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서비스에 필요한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조(가맹점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차별 취급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이용자가 결제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4. 다른 가맹점 명의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5.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가맹점은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7.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한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도난, 분실 또는 위. 변조된 모바일현금카드 또는뱅크머니 거래의 경우 거래 시 입력한 비밀번호 등과 발행기관에 신고한 비밀번호 등이 일치하여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해당 거래에 공모, 가담 또는 협조하였거나 기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처리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온라인결제 프로그램 등에 기술적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온라인결제 프로그램 사용방법의 숙지, 유지 및 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불법,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가맹점은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은행 준수사항)

은행은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입금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서 거래대금을 결제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제4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거래방법)

-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뱅크월렛에서 모바일현금카드 또는뱅크머니 등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승인을 받습니다.
- ② 가맹점은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현금카드, 뱅크머니 등의 결제수단과 거래고유번호, 가맹점명, 가맹점관리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등 기타 은행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거래한도)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1회 및 1일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구분		1회 한도	1일 한도
현금 카드	오프라인결제	10원~500만원	2천만원 이하
	온라인결제	50원~30만원 미만	
뱅크 머니	오프라인결제	잔액범위 내	잔액범위 내
	온라인결제	잔액범위 내 (30만원미만)	잔액범위 내

제8조(거래의 취소)

-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뱅크월렛 서비스를 통하여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거나 가맹점 책임하에 직접 이용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은행이 서비스 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이 당일 거래에 대해 뱅크월렛 서비스를 통하여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 1. 모바일현금카드 : 거래 당일 이용자계좌로 즉시 입금
 - 2. 뱅크머니 : 거래일 익영업일에 이용자계좌로 입금
- ③ 가맹점이 당일 이전거래에 대해 뱅크월렛 서비스를 통하여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 1. 모바일현금카드 : 가맹점 입금계좌로부터 이용자계좌로 즉시 이체
 - 2. 뱅크머니 : 가맹점에서 취소내역을 전송한 날의 익영업일에 가맹점 입금계좌로부터 출금되며 출금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계좌로 입금
- ④ 가맹점은 제3항의 거래취소에 따른 환불대금 해당액을 가맹점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입금계좌의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거래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직접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거래대금 입금)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49호(2016.4.18)

은행은 모바일현금카드 및뱅크머니 거래대금을 거래일 익영업일에 가맹점 입금계좌에 입금합니다.

제10조(수수료)

- ① 가맹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통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는 제9조의 거래대금 입금 시 가맹점 수수료를 차감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제11조(이용자와의 분쟁)

- ① 가맹점과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서비스의 거래대금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변경통지)

- ①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서면 등 은행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맹점이 본 약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가맹점에 1년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6. 가맹점이 부도,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은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가맹점이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
- ② 가맹점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양도금지 등)

가맹점은 이 가맹점 계약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약관 위반 시의 책임)

- ① 가맹점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은행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이용자도 서비스 고객 이용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거래불성립 및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본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은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약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과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됨을 통지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신용정보제공)

- ① 은행은 정당한 서비스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제 정보를 가맹점 승인 및 관리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기관과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③ 가맹점과 이용자간 서비스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약관변경)

- ① 은행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웹페이지에 게시하며, 그 밖에는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관계 법령, 이용약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공동업무 규약에 따릅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